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0.08.27.

개정 2018.05.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일반대학원 법학과(이하 “법학대학원”이라 한다)에 재학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절차 및 그 밖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칙상 징계”란 서울대학교 학칙 제9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명, 정학, 근신을 말한다.
2. “자체징계”란 학칙상 징계 이외에 법학대학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훈계, 봉사활동, 기타 제3조 규정예 의한 징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징계를 말한다.
3. “징계”란 학칙상 징계와 자체징계를 모두 의미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① 학생에 관한 징계사건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법학대학원 내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를 통해 선임되는 8인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이하 “학생부원장”이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부원장의 경우는 해당 직의 임기동안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과반수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 중 학생의 친족인 위원과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공정함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조사·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2인 이상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징계사건에 관하여 대체위원을 선임한다.

**제5조(징계조사·심의의 개시 및 기한)** ① 징계사건의 조사·심의를 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위원회는 처음 소집된 날부터 60일 안에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학생의 출석)** ① 위원회는 학생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징계사유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문기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학생에게 출석을 통지할 수 없거나 학생이 출석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심의를 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출석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학생 및 관계인의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학생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도교수 및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 및 관계인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종류와 내용 제시)**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징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해 의결하고 원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원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 의결할 때 학생의 평소 품행, 공격, 반성하는 태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업이나 시험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이외에 학점상의 불이익을 담당교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징계의 처분 및 통지)** ① 위원회가 학칙상 징계를 의결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체징계의 경우에는 원장이 징계처분을 한다.

③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대상 학생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하고 이에 대해 다음 각호의 경우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1.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징계의 재심의)** ① 자체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원장에게 재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원장은 제10조제3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교수회의에 재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징계청구의 시효)** 자체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원장은 위원회에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심의를 요구하지 못한다.

**제13조(자체징계의 불이행)** 학생이 자체징계를 성실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위원회에 학칙상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